

#### 4. 지원자격

전형구분		전형유형	지원자격
정원내	일반전형	수능전형 실기전형	· 고등학교 졸업(2024년 2월 졸업예정)자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
	특별전형	학생부전형	· 고등학교 졸업(2024년 2월 졸업예정)자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
		성인학습자	· 만21세이상(2003.01.16. 이전 출생자) 출생자 중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정원외	기회균형선발	농어촌 학생	<p>I. 유형 : 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+부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</li> </ul> <p>·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·어촌 지역 :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</li> <li>- 도서벽지 지역 :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</li> <li>- 학교 재학 중 읍·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당해지역 농·어촌 인정</li> <li>-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계고) 및 검정고시 제외</li> </ul> <p>※ 본 대학에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(I 유형은 부모 포함)가 최종 고교졸업일까지 해당지역에 재학(이수)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합격(입학)이 취소됨</p>
			<p>II. 유형 : 초등(6년)+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본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</li> </ul>
	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	<p>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</li> <li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</li> </ul> <p>※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해당 가구 :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 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차상위 자활 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</p>	
	전문대학 이상졸업자	<p>·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</p> <p>· 기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</li> <li>- 수업년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</li> <li>- 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취득자(학사학위과정에 한함)</li> </ul> <p>※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불가</p>	
	재외국민 및 외국인	<p>·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교육재외국민 및 외국인(제2호),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(제6호),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, 외국인,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(결혼이주민)(제7호)에 해당하는 자</p> <p>※ 재외국민·외국인전형 모집요강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(2023.12월 이후)</p>	